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3월 18일  
제 안 자 : 이기동 의원 외

### □ 제안이유

- 물품 매입요구와 관련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, 상위 법령의 개정 후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### □ 주요골자

- 안 제8조 및 제9조중 “업무주무자”를 각각 “각 부서의 업무 책임자”로 하고,
- 제16조제3항1호중 “직할시”를 “광역시”로 함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8조 및 제9조중 “업무·주무자”를 각각 “각 부서의 업무 책임자”로 하고,
- 제16조제3항1호중 “직할시”를 “광역시”로 한다.

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지 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<u>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</u> <u>물품으로 한다.</u>	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.... ..... .....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.....	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(개정안과 같음)
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② 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정부각부처·특별시, 직할시 및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.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③ (현행과 같음)	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..... ..... ..... ..... 1. .....광역시 ..... ..... ..... .... 2. (개정안과 같음)  ④ (개정안과 같음)